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717)

2022.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2년 2월 9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개정안은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를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 외에 운행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¹⁾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해 개선명령과 10일 이내의

1) 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²⁾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³⁾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점검할 수 있으나⁵⁾, 최근 운행차로 인한 소음 민원의 증가⁶⁾로 소음허용기준 위반을 단속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2) **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료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4)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30일까지		
	단속 건수	조치내용		단속 건수	조치내용		단속 건수	조치내용		단속 건수	조치내용	
		행정 지도	과태료		행정 지도	과태 료		행정 지도	과태료		행정 지도	과태료
합계	155	155	0	341	340	1	855	831	24	661	645	16

자료 : 환경부

5) **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 의한 상시 적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수시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행차 소유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⁷⁾, 「습지보전법」 제19조⁸⁾, 「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2⁹⁾ 등에서도 포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음.

6) 교통소음 민원의 경우, 2017년 846건에서 2020년 1,299건으로 증가(환경부)

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습지보전법」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 「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33